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077

발의연월일: 2021. 12. 23.

발 의 자:정희용・金炳旭・추경호

지성호・김용판・송언석

김희곤 · 최춘식 · 이채익

김영식 · 김석기 · 김성원

의원(12인)

제안이유

농어업재해보험은 2001년 현행법의 제정에 따라 사과와 배를 시범사업 대상으로 하여 처음 도입되었으며, 농어민이 자연재해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보험으로 성격을 가지고 있음.

최근 자연재해가 빈발하면서 재해보험에 대한 농어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농어업재해보험의 대표보험인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2020년 12월 현재 보험대상 농작물은 벼, 감 등 67개에 달하고 태풍, 우박, 집중호우, 폭염, 방충해 등 재해에 따라 다양한 보험 상품이 개발・출시되어 있음.

이러한 20여년의 보험 역사 및 외연적 성과에 힘입어 재해보험은 농어민에게 친숙한 제도로 자리잡고 있으며, 실제로 2020년 기준 농작 물재해보험 보험가입률은 45.2%(보험대상 품목 면적 기준)에 이르고, 그동안 지급된 보험금도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2배에 이르는 등 재해에 직면한 농민의 경영안정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45.2% 보험 가입률은 아직 충분히 높은 수준이라 보기 어렵고 농작물의 경우 대상에 따라 가입 편차도 심한 편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농업 특유의 다품목 소량생산 구조, 기상 현상의 지역별 편차 및 잦은 기후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재해보험의 안정적인 설계와 운용이 쉽지 않은 과제임이 드러나고 있음.

이에 재해보험의 손해평가나 보험료율 등의 산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현행 보험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농어민의 재해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농어 민의 경영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심의회에 분과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분과위원회는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및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럼 분과위원회로 전문·세분화함으로써 재해보험 목적물의 선정, 손해평가 등이 합리적·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3조제6항).
- 나. 지역별, 재해별에 따른 기후·기상 현상, 품목별 재배(양식)면적과 생산량 등의 기초 통계자료를 확대 수집·관리·활용되도록 함으로

써 손해평가 및 기본요율 등의 산정이 보다 객관적·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26조제1항).

법률 제 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 중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농작물재해보험분과위원회
- 2. 임산물재해보험분과위원회
- 3. 가축재해보험분과위원회
- 4. 양식수산물재해보험분과위원회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두는 분과위원회 제26조제1항 중 "보험대상의 현황, 보험확대 예비품목(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선정한 보험목적물 도입예정 품목을 말한다)의 현황, 피해규모, 피해 원인 등 보험상품의 운영 및 개발에 필요한"을 "보험상품의 운영 및 개발에 필요한"을 "보험상품의 운영 및 개발에 필요한 지역별, 재해별에 따른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보험대상의 현황
 - 2. 보험확대 예비품목(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선정한 보험목적물 도입예정 품목을 말한다)의 현황
 - 3. 피해 원인 및 규모

- 4. 기후변화 및 기상 현상
- 5. 농어가 소득 및 지원 내역
- 6. 품목별 재배 또는 양식 면적과 생산량 및 가격
-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계자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심의회) ① ~ ⑤ (생 략)	제3조(심의회)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심의회는 그 심의 사항을	6
검토・조정하고, 심의회의 심의	
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	
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u>둔다</u> .
<u><신 설></u>	1. 농작물재해보험분과위원회
<u><신 설></u>	2. 임산물재해보험분과위원회
<u><신 설></u>	3. 가축재해보험분과위원회
<u><신 설></u>	4. 양식수산물재해보험분과위원
	<u>ಶ</u>]
<u> <신 설></u>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두는 분과위원
	<u> </u>
⑦・⑧ (생 략)	⑦·⑧ (현행과 같음)
제26조(통계의 수집·관리 등) ①	제26조(통계의 수집・관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	
수산부장관은 보험대상의 현황,	<u>보험상품의 운영</u>
보험확대 예비품목(제3조제1항	및 개발에 필요한 지역별, 재해
제1호에 따라 선정한 보험목적	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물 도입예정 품목을 말한다)의	
현황, 피해 규모, 피해 원인 등	
보험상품의 운영 및 개발에 필	

요한 통계자료를 수집·관리하여 하며, 이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u><신 설></u>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u><신 설></u>

<신 설>

② ~ ④ (생 략)

-----.

- 1. 보험대상의 현황
- 2. 보험확대 예비품목(제3조제1
 항제1호에 따라 선정한 보험
 목적물 도입예정 품목을 말한다)의 현황
- 3. 피해 원인 및 규모
- 4. 기후변화 및 기상 현상
- 5. 농어가 소득 및 지원 내역
- 6. 품목별 재배 또는 양식 면적 과 생산량 및 가격
-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통계자료
- ② ~ ④ (현행과 같음)